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8-47호

미아동3-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21호(2014.06.19.)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, 2017.01.15.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6-31호(2016.02.05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미아동3-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18년 3월 30일

강 북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미아동3-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-111번지 일대
3. 사업시행면적 : 10,018㎡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미아동3-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학전
5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9길 110 지하층 1호
6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8년 3월 27일
7.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지
 - 가. 토지이용계획

총 계 [㎡]	택지[㎡]			정 비 기 반 시 설[㎡]		
	소 계	공동주택	사회복지 시설	소 계	도로	공원
10,018	8,339.4	8,089.4	250	1,678.6	1,118.6	560

나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구 분	대지면적(㎡)	동수	층 수	세대수	연면적(㎡)
계	8,089.4	6	지하4층/지상11층	162	27,055.75
분양주택	8,089.4	6	지하4층/지상11층	162	25,884.77
근린생활시설	주택용지에 포함	-	지하4, 지하2, 지하1층	-	1,170.98

다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 공급세대수								상가면적 (㎡)
	계	54㎡ (A)	54㎡ (B)	59㎡ (A)	59㎡ (B)	79㎡	84㎡ (A)	84㎡ (B)	
계	162	1	8	17	42	45	30	19	1,170.98
토지등소유자	78	1	-	9	33	10	13	12	65.05
보류시설	1	-	-	-	1	-	-	-	-
일반분양	83	-	8	8	8	35	17	7	1,105.93

라. 권리자별 관리처분계획

권리자수	분 양				현금청산	협의매수	그 밖의 처분
	소 계	공동주택	상가	공동주택 및 상가			
76	75	74	-	1	1	-	-

마. 정비기반시설 등(도시계획시설 포함)

구분	도 로	공 원	사회복지시설
면적(㎡)	1,118.6	560	250
관리청(귀속청)	강북구	강북구	강북구

8.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북구청 주택과 (☎ 901-6823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